

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0년 3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부패행위의 신고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신고대상자를 공무원, 기간제 근로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, 보조금 지원 받은 단체까지 확대

○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및 형법상 중대범죄 공소시효기간으로 확대

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 대상인 공무원을 “시·군과 소속 기관 또는 도와 시군이 설립하거나 출자·출연한 법인의 공무원이나 임직원”에서 “시·군과 소속기관의 공무원, 공무원, 기간제

근로자 또는 도와 시·군이 설립하거나 출자·출연한 법인·공직유관
단체,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임직원”으로
변경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

-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시효 및 형법상 중대범죄
공소시효 기간으로 확대·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